

의안번호	제586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5월 30일

#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86
----------	-----

발의연월일 : 2024년 5월 30일

발 의 자 : 이정범·김현문·박병천  
박용규·박재주·유상용  
이양섭 의원

## 1. 제안 이유

본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다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생률에 따른 학령인구감소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다자녀 교육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다자녀 자녀의 정의를 셋째에서 둘째로 변경함. (안 제2조제1호)
- 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신설)
- 다.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에 포함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셋 이상”을 “둘 이상”으로, “셋째”를 “둘째”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4조를 제6조로 하며,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원 사업
3. 지원대상 선정
4. 재원확보 및 지원 방법
5. 실태조사
6. 그 밖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중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u>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u>셋 이상</u>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u>셋째</u> 이후 학생을 말한다.</p> <p>2.·3. (생략)</p> <p><u>&lt;신 설&gt;</u></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u>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p>	<p>제1조(목적) -----            ---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p> <p>제2조(정의) -----            -----.</p> <p>1. -----            ----- <u>둘 이상</u> -----            ----- <u>둘째</u> -----.</p> <p>2.·3. (현행과 같음)</p> <p>제3조(교육감의 책무) <u>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u>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4조(적용범위) ----- <u>교육감</u>            -----            -----            -----            -----.</p>

1. ~ 3.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신설>

제6조 (생략)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원 사업

3. 지원대상 선정

4. 재원확보 및 지원 방법

5. 실태조사

6. 그 밖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관계 법령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2. 6. 15.] [법률 제185805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2. 5. 23.>

#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다자녀 기준(셋째 자녀 → 둘째 자녀) 완화를 통한 다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및 교육 지원 강화
- 다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속적인 출생률 하락에 따른 학령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

## 2. 비용 발생 요인

- 다자녀 기준 확대 적용으로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 및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의 예산 소요액 증가

## 3. 관련조문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18.4.20.제정)

##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가. '24.4.1.기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둘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학생 현황 전수조사를 통한 학생 수 파악
  - 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소요액 산출방법: 600천원×학생 수×12%\*
  - \* 최근 3년간('21~'23년) 방과후학교 유상 참여율 평균: 12%

다. 졸업앨범비 지원 소요액 산출방법: 70천원×학생 수×13%  
 \* '23년 다자녀 학생 졸업앨범 신청 비율: 13%

○ 추계 결과

가. '24년 둘째 이후 자녀 학생 현황 조사 결과(재정복지과-12316, 2024.4.19.)  
 (단위: 명, %)

구 분	둘 째	셋 째	넷 째	다섯째	여섯째 이상	합 계
초등학교	26,301	7,495	937	166	61	34,960 (48.4)
중학교	14,691	4,286	538	87	39	19,641 (27.2)
고등학교	12,888	3,953	491	65	25	17,422 (24.1)
특수학교	133	51	9	2	2	197 (0.3)
각종학교	21	5	0	0	0	26 (0.0)
합 계	<b>54,034</b> (74.8)	15,790 (21.9)	1,975 (2.7)	320 (0.4)	127 (0.2)	72,246 (100)

나. 둘째 자녀 지원 시 추가소요액: 4,382,080천원

- 자유수강권: 600천원×6,484명(54,034명×12%) = 3,890,400천원
- 졸업앨범비: 70천원×7,024명(54,034명×13%) = 491,680천원

[참고] '24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본예산 기편성액: 1,514,850천원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셋째 이후): 1,348,740천원(2,248명)
2. 졸업앨범비 지원(셋째 이후): 166,110천원(2,373명)

○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4,382,080	4,338,259	4,294,877	4,251,928	4,209,409	21,476,55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3,890,400	3,851,496	3,812,981	3,774,851	3,737,103	19,066,831	
졸업앨범비	491,680	486,763	481,896	477,077	472,306	2,409,722	
재원 조달	4,382,080	4,338,259	4,294,877	4,251,928	4,209,409	21,476,553	
의 존 재 원	소 계	4,382,080	4,338,259	4,294,877	4,251,928	4,209,409	21,476,553
	보통교부금	4,382,080	4,338,259	4,294,877	4,251,928	4,209,409	21,476,553
자 체 수 입	소 계	0	0	0	0	0	0
	자체수입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 비 등)	0	0	0	0	0	0	

※ 예산소요액 매년 1%\* 감소 예상

\* 최근 3년간('21~'23년) 학생 수 감소율 평균: 1%